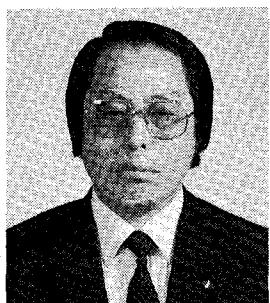


특집 / '90년도 낙농육우산업의 전망'

낙협 편

낙협설립은 필연적이며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할 단체



박재호
경북낙농업 협동조합장

-낙농산업의 정책전환-

낙농협동조합을 거론하면서 낙농진흥법을 지나칠 수 없고, 그러자면 우선 낙농산업 정책문제를 조명해 볼 필요를 느낀다.

한국 낙농산업의 근간이라 할 현행 낙농진흥법을 들여다 보노라면, 마치 성인이 갓난애기 옷을 입고 있는 정도도 되지 못한, 기저귀를 차고 있는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정부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기대되었을 법도 한 제4조 낙농진흥기금, 제5조 정부지원 등이 사문화 되어 왔고, 얼토당토 않는 축산물 위생 처리법을 동원하여 집유선 동결조치로 생산농가를 질서라는 테두리로 묶어두더니, 이제는 그도 사라지고, 유가공업체의 단합에 의하여 이리저리 생각대로 형편대로 끌고 다니도록 방치된 상태라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낙진법 개정안이 사실상 새로 제정하는 듯한 안이 되고있고, 그러자니 시비거리도 많음은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는가? 더는 벼틸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기에, 전망되는 것이 아니라, 90년도에는 낙농 산업 정책의 일대전환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눈치 저눈치 살피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던 정책 당국도 세계의 개방시장에서 일몸동이를 모면할 수 있는 방향의 낙진법 개정을 연초의 임시국회에서 끝낼 것을 약속하고 있고,

집유권 포기를 주저하던 유가공업체들 또한 쌓여 가는 분유처리에 두손을 들지 않을 수 없으며,

생산농가를 가장 위하는양 떠들고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낙진법 개정시한만 지연시키고 있는 축협중앙회가 막상 색소 섞은 분유가 농가에 되돌려져도 일언반구 책임있는 말한마디 없다면, 이제와서 무슨 명분을 걸고 할가할부 할 것인가, 수급조절은 바로 생산조절로 확대해석하여 거부반응을 해오던 일부 생산농가도 멀쩡한 젖소의 20%를 도태시켜야 한다

는 안일한 수급대책에도 조용하기만 한 현실을 본다면, 인식의 잘못을 깨달음은 물론, 그냥 두었다가는 값싼 유제품이 무더기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며 유업체의 불성실한 유제품개발의지는 30% 아니 그 이상의 도태인이 나올수 있고 끝내는 설 땅마저 잃는다는 가정과 함께 설사 낙농업이 안정적인 산업으로 비교될 수 있을 정도가 된다손 치더라도 타업종 농가가 대거 참여하거나, 기업수준의 목장에서 무제한 생산을 꾀한다면(인력난 등으로 이같은 현상은 희박하겠지만) 기존농가의 안정적 생업보장은 곤란할 것임에 생각이 미치므로, 생산농가가 주도할 수 있고, 통제기능을 가진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하는 절박한 공통인식 때문에 90년도 하반기부터는 집유일원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낙협설립은 필연적인것-

낙진법 개정은 집유일원화를 전제하고 있고, 집유를 일원화 함으로서, 집유비를 절감하여 결과적으로 생산비를 줄이고 생산농가가 공동판매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공동 책임을 가지며, 수집시의 검사와 판매시의 검사과정을 거침으로써 검사의 객관성,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기에 생산자 이익집단인 협동조합에서 집유를 해야하는데에 의견이 도출되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할 때, 집유권역을 중심으로 한 낙농협동조합 설립은 필연적이라 할 것이다. 또 집유일원화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유조합이 사전에 이루어져 있어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같은 당위성을 통감한 농가들이 뜻을 모아, 속속 낙농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있고 또 당국에서도 인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집유일원화가 되면 무조건 낙협운영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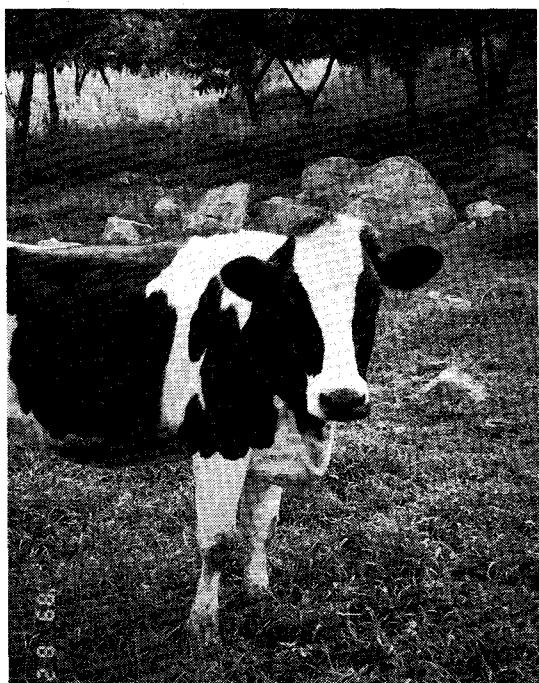
낙진법 개정은 집유일원화를 전제하고 있고, 집유를 일원화 함으로서, 집유비를 절감하여 결과적으로 생산비를 줄이고 생산농가가 공동판매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공동 책임을 가지며, 수집시의 검사와 판매시의 검사과정을 거침으로써 검사의 객관성,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기에 생산자 이익집단인 협동조합에서 집유를 해야하는데에 의견이 도출되었음은 다 아는 사실

하다는 발상은 삼가야 하겠지만, 업종별 협동조합이 복합적 지역조합에 비해 발전속도가 빠름을 보이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수입개방시대에서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대체산업간에도 이해가 상반됨을 의식할때 낙농가만의 자구책은 이 길밖에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집유조합으로서의 기능과 포개어 본다면 이제는 망설이지 말고, 3만6천여 낙농농가가 협동조합이라는 스크럼을 짜고 오로지 앞으로 전진만을 해야 할 것이라.

-낙협설립 현황-

90년도 하반기부터 집유일원화가 실시될 것임을 전망하면서 그 준비작업이 되어야 하는 낙협설립의 실태를 살펴본다면, 기히 집유를 하거나 처리까지 하고 있는 서울우유조합을 비롯한 전국낙농협동조합연합회(약칭: 전낙연) 소속으로 부산우유, 대구우유, 전남낙협, 충남낙협, 천안낙협, 충북낙협, 제주낙협 등이 있고, 집유일원화 시책에 대비하여 설립한 전국낙농협동조합협의회(약칭: 전낙협, 참고: 전낙연은 축협중앙회 회원조합만으로 구성하고,

집유를 하고 있는 지역조합도 포함하고 있고, 전낙협은 창립총회를 가진 미인가 조합도 포용한 업종조합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당장은 합일이 불가능함) 소속으로 인가를 취득한 경남낙협, 경북낙협, 강원낙협, 지리산낙협, 동진강낙협, 완산낙협, 경산낙협, 금오산낙협, 경서낙협, 공주낙협 등과 창립총회를 마친 이천낙협, 양평낙협, 여주낙협, 백제낙협, 홍성낙협, 경북북부낙협 그리고 순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부낙협 등으로 모두 25개의 낙협이 설립되어 있다. 그밖에 집유일원화가 가시화 되면 강원도지역에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경기도 남부지역, 북부지역 등에서 낙협설립에 참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도 설립을 하고 인가를 취득치 못한 조합들 중에서 약간의 보완조치만 서두르면 홍성, 백제, 동부, 경북북부조합 등은 곧 인가를 취득할 것으로 보며 서울우유조합업무구역으로 되어있는 경기도 지역에서 업무구역 조정 문제로 진통을 겪을 것이며, 이때



문에 남부지역의 낙농가들이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망설이고 있는줄 안다. 그러나 기히 인가를 취득한 낙협들도 처음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민주화, 자율화의 시대상에 따른 끈질긴 노력 끝에 생취한 결과임을 상기할때 능히 인가되리라 확신한다.

—소아(小我)를 버릴때—

한국낙농산업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일대 혁신을 단행하는 정책의 테두리는 이미 잡혀있음이고 이제 구체적인 작업만 남았다고 할 지금이면서 사소한 이해관계에 얹혀 뒷날의 웃음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낙협설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같은 생산농가로 구성된 기존 조직체들의 비협조 내지 저지에 있었음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정책당국도 너무나 안일한 자세에서 있었음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자주적, 자율적 해결책이 가장 바람직 하기는 하나, 염연히 인가권자가 있고 업무구역 조정권자가 있으며, 국회에서 또 법은 만들어져야 한다면 자율적으로 모든 문제가 풀어질 수 없고, 집유일원화를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대 명제앞에, 객관적이고도 대국적인 결정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집유비용을 최소화하고 생산농가가 최대한의 생업보장을 받으면서 협동조합의 본질인 공동유대의 공고화를 기함이 낙진법개정의 이상이라고 본다면 「주소녀 거소」보다는 주사업장을 기준으로, 집유권역을 중심으로, 1일 집유량 100톤 이상 집유할 수 있는 바탕을 가진 낙협이 설립됨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때, 군단위로 된 지역축협에서 거부반응이 있을수 없고, 한 시군단위로 낙협을 설립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며, 도단위 광역을 선점했다고 분할에 협조를 못하겠다함은 더더욱 지탄받을 처사인 것이다. 수입 개방이란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위에 같은 배를 타고

가는 낙농인들일진대, 배가 엎어진다면 내 몫 네 몫이 어디에 있겠는가? 고개를 들어 시야를 넓힌다면, 눈앞의 작은 이익은 버릴수도 있다고 본다.

-90년도 낙농산업 전망은 우리가 만들어야-

모두에서 필자는, 전망이란 표현보다 만들어야 할 것임을 주장한바 있다. 특히 낙협설립은 지금까지 만들어 왔었지 주어진 것이 못되었다. 같은 이유로 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뜻과 지혜를 모아 만들어 내어야 하는 구도를 그려보자.

우선, 정책당국이 수수 방관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집유조합 지정시에는 운영과 채산성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집유를 할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기에 사전 조정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경남 낙협업무구역 내의 일부 부산우유조합원에 내려진 해결책이라는 것이 집유일원화에 더 큰 문제와 앞으로 생겨날 조합들에 분쟁의 불씨를 만들어 놓았으니, 객관적 위치에서의 단안이 요구되는 것이다.

서울우유 권역을 제외한 각 지역은 그런대로 기히 설립된 낙협에 낙농가 모두가 참여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경기 지역의 실마리는 하나도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서울우유조합의 방대한 능력으로 전역의 집유를 할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 이미 설립한 3개의 낙협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혹자는 집유조합을 지역축협에 맡길 것을 운운하나 그럴바에는 낙협이 집유를 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할 것이다. 본지를 통하여 낙진법 개정시 한시법조항을 삽입하여 서울우유조합의 자산 재평가에 의한 지분의 일부를 신규 조합에 참여하는 낙농가의 출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고, 또 어떤분은 해쳐 모여식 방안을 주장하였다고

듣고 있다. 이 모두가 실행하기 어렵다면 어차피 풀어야 할 숙제이기에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고 제안코자 한다. 지역축협에 가입되어 있는 낙농농가가 낙농협동조합에 가입된 사례가 많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서울우유조합원이 이천낙농협동조합에도 가입을 하는 것이다. 개정하고자 하는 낙진법 정부안(한국낙농육우협회안이기도함)에 의하면 낙농위원회가 생산농가로부터 원유를 매입하는 형태이므로 집유업무와 가공 처리 업무는 분리가 되어, 서울우유조합으로부터는 지분에 따른 배당을, 집유조합으로부터는 지분 및 이용고 배당을 받는다면 큰 피해는 없지 않을까?

업무구역외의 기존 조합원은 모든 기득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껏 시달림을 받아왔거나, 어렵게 낙협을 설립하여 당신들 때문에 인가를 취득치 못하고 애타하는 절대다수(60%)의 이웃을 돋는다는 차원에서 생산농가는 한발짝씩 양보하고 서울우유조합 지도부와 정책당국이 진지하게,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 든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감히 주장한다.

인가서류를 받아놓고 골치를 앓지 말고 이미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지도자들과 서울우유 그리고 정책당국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될 것이며, 경기지역 문제가 해결된다면, 생산자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앞장서 조정역을 맡고, 축협중앙회는 과감히 회원조합으로 받아들여 수용함으로서 전낙연, 전낙협이 하나가 되어 개정된 낙진법에 의한 집유일원화를 원활히 실행할 수 있게 할 것이며,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낙농위원회 구성으로, 유제품 수입통제, 잉여원유의 합리적 처리, 수급조절 방안 강구로, 기존 낙농농가가 안정된 바탕 위에서 계획성 있는 생업을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